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75호 2017. 11. 28(화)

# 포항시보

## ◀ 입법예고 ▶

-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포항시 농업기술센터 제2017 - 3호)..... 2

## ◀ 공 고 ▶

-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제2017 - 1606호) ..... 11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제 2017 - 386호) ..... 12
-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포항시의회 공고 제10호) ..... 18

회								
람								

**입법예고**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7 - 3호**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11. .

**포 항 시 장**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영능력 향상, 모성보호 및 복지향상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나. 농림축산식품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의 양성평등 강화 시책에 따른 가족(부부)공동경영협약.

### 3. 관련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4. 조례안 : 붙임

### 5. 예고기간 : 2017. 11.27. ~ 2017. 12.18.(21일간)

### 6. 의견제출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농업정책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 전 화 : 054)270-2663 ~ 6, FAX 054)270-2670,
  - E-mail : sanghak93@korea.kr

###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육성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포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기술·교육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시장은 시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여성농어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소장, 업무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나.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어업인육성 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미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회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능력을 향상하여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사업
-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지원액을 전액 환수한다.

**제16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 공동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어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 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

**제18조(가족공동경영협약 장려)** 시장은 가족원의 평등한 농어업경영 참여를 통해 밝고 건강한 가정과 여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가족공동경영 협약'을 장려할 수 있다.

**제19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농어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 귀농어·귀촌 및 결혼이민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기술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7 - 1606호

포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열람 공고

경상북도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1. 27.

포 항 시 장

-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2. 열람장소 : 포항시청 공원과 (09:00 ~ 18:00)
- 3. 도시계획시설사업 요지

사업의 종류	위 치	사업시행자	사업 규모	시행기간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방기념공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산12-1 일원	경상북도 (사방기술교육 센터장)	실습장조성 (1,480㎡)	실시계획 작성(인가)일 ~ 2018.12.31

-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 공원과 [☎(054)270-3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공고 제 2017-386호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시 관내 노상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자동차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및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1.

### 포 항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17. 11. 21. ~ 2017. 12. 21. (30일간)

2. 폐 차 장 소 : 포항시 관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체

3. 폐차 예정일 : 2017. 12. 22. 부터

4. 대 상 차 량 : 경북80가3077 외 13대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30만원, 불응한 경우 100~150만원)

나.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본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나.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7. 문 의 처 : 포항시청 교통지원과 자동차관리팀 ☎(054)270-3643

붙 임 : 1. 강제처리 대상 1부.

2. 압류 및 저당내역 1부. 끝.

##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7-169	경북80가3077	와이드봉고 킹캡	이*우	590807- 1*****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2017-170	85나7854	포터II	(주)벤****류	2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017-174	부산80루6401	봉고 프린티어	(주)*현	520303-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2017-171	번호판없음	이륜차(노랑)	미상	미상		
2017-172	번호판없음	이륜차(검정)	미상	미상		
2017-173	번호판없음	이륜차(빨강)	미상	미상		
2017-166	29나7527	옵티마	S***Y S***A	900801- 5*****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로	
2017-165	번호판없음	이륜차(분홍)	미상	미상		

## 강제처리 대상

관리 번호	자 동 차 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비 고
2017-168	번호판없음	이륜차(빨강)	미상	미상		
2017-178	번호판없음	이륜차(검정)	미상	미상		
2017-180	번호판없음	이륜차(빨강)	미상	미상		
2017-184	번호판없음	이륜차(회색)	미상	미상		
2017-188	번호판없음	이륜차(빨강)	미상	미상		
2017-189	번호판없음	이륜차(검정)	미상	미상		
		이	하	여	백	

**압류 및 저당내역**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촉탁기관	압류(저당)번호
1	85나7854	포터II (PORTERII)	(주)벤코리아물류	215-8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 길 15, 201호(석촌동)	가압류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1749
						압류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454
						압류3	송파구청 녹색교통과	녹색교통과-6735
						압류4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4588
						압류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9895
						압류6	서울특별시 송파구	맑은환경과-29895
						압류7	서울특별시 송파구	맑은환경과-29895
						압류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3750
						압류9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3750
						압류10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8914
						압류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8914
						압류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9185
						압류13	송파구청 녹색교통과	녹교-45673
						압류14	송파구청 녹색교통과	녹교-5942
						압류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4129
						압류16	서울송파경찰서	2013D1125013025
						압류17	서울송파경찰서	2013D1125014192
						압류18	서울송파경찰서	2013D1125014313
						압류19	서울송파경찰서	2013D1125017076
						압류20	서울송파경찰서	2013D1125019677
						압류21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28867
						압류22	송파구청 세무2과	세무2과-50510
						압류23	서울송파경찰서	2014D1125007939
						압류24	서울송파경찰서	2014D1125012710
						압류2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건교-10362
						압류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14572
						압류27	서울송파경찰서	2014D1125025640
						압류2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30959
						압류2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환경과-14202
						압류30	서울송파경찰서	2015D1125020894
						압류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환경과-29999
						압류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환경과-13320
						압류3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환경과-29959
						압류34	서울송파경찰서	2017D1125012299
						압류3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환경과	환경과-14585
						저당01	대우캐피탈주식회사	1123-2007-009047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타기관	압류(저당)번호
2	경북29나 7527	옵티마	SOKLY SOKLA	90080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동로58번 길 40 (호동)	압류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세무과-13567
						압류2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 등록과	차량등록과-17415
						압류3	포항시 건설교통사업본부 차량 등록과	차량등록과-17415
						압류4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과-30647
3	경북80가 3077	와이드봉고킹 캡	이성우	590807-*****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학천로 20-10 (죽도동)	압류1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	포항시 세정과	세정-27143
						압류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지환경위생과-39707
						압류4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 등록과	차량등록과-3983
						압류5	북구청 건설교통과	북건교-7787
						압류6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 등록과	차량등록과-9588
						압류7	포항시 도시건설사업소 차량등 등록과	차량등록과-9588
						압류8	북구청 건설교통과	북건교-9697
						압류9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지환경위생과-14636
						압류10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북지환경위생과-31347
						압류11	경상북도 포항시	세무과-1894
						압류12	남구건설교통과	남건교-2344
						압류13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4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5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6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7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8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19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0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1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2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3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4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5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6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7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8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29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30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31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32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33	포항시 재정관리과 통합징수	재정관리과-17407
						압류3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북지환경위생과-13888
						압류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북지환경위생과-28692
						압류3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구 북 지환경위생과	북북지환경위생과-14485
4	부산80루 6401	봉고프런티어	(주)보현	621-8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에이스하이테크21 6층 607호 (우동)	압류1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	자격징수부-910300
						압류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469



번호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상주소	구분	축적기관	압류(지당)번호
						압류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469
						압류4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2014.4.10)
						압류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31120
						압류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무2과-140912-1
						압류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4846
						가압류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카단20198
						압류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5963
						압류10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55562(2015.10.08.)
						압류11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55562(2015.10.08.)
						압류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567
						압류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9691
						압류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35132
						압류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1226
						압류1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생활 지원국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20520

포항시의회 공고 제10호

## 제 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공고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4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2017년 11월 30일(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포항시의회 본회의장

2017년 11월 24일

포항시의회의장 문 명 호